

여성노인에서 학대 시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 정 미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among Elderly Women

Ko, Chung Mee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204 elderly women aged over 60 living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χ^2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Conclusions:** 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lder abuse including elderly welfare law is crucial toward elderly women in preventing elder abuse.

Key Words: Elder abuse, Report, Intention, Elderly, Wome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과 2030년에 각각 고령사회(노인인구 14.9%)와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4.9%)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특히 급증하는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 노인의 증가는 신체적 질병, 일상생활 수행능력저하, 치매 등의 인지 기능장애, 경제적 능력 저하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증가로 이어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증대 시킴으로써 학대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Jo, 2008).

세계적으로 노년기 인구 가운데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성비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져서 여성노인의 과다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의 여성노인 100명 당 남성노인의 비율은 65~69세 연령층에서 69.2명이고, 70~79세 연령층에서는 62명,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43.2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비 차이가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또한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85%인데 반해 여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35%이다. 이처럼 노인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인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기간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남성노인보다 많은 문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여성노인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학대에 희생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Kosberg, 1998; Han, 2000). 배우

주요어: 노인학대, 신고 의향, 여성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o, Chung Mee,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un-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725, Fax: 82-2-920-2091, E-mail: cmklee@sungshin.ac.kr

투고일: 2010년 7월 31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9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

자 상실과 함께 찾아드는 여성노인의 사회성 결핍, 다산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경제적 빈곤, 교육적 혜택의 저하 등이 여성노인을 더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하게 한다(Lee, 2005). 통계청(2006) 자료에 따르면 기초 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10.1%인데 반해 남성노인의 비율은 5.3%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학대사태에서 보듯이 총 학대피해노인 2,369명 중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각각 68.4%와 31.6%를 차지하여,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이며 의존성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또한 노인학대 연구를 수행한 자료에서도 여성노인이 학대에 희생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Seo, 2000).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학계나 정부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Yoo & Kim, 2004).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신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미약하였으나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2005년에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13,836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5,467건으로 늘어 3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또한 2005년 2,038명이었던 것이 2008년 2,369명으로 늘어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그러나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에서 노인 100명 당 6.3명이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의 노인들만이 신고를 통한 공적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 건수 중 학대 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노인들은 학대를 당했을 때 노인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학대당한 사실을 부정하려는 노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체념, 위축, 공포, 우울, 분노 등의 반응이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반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Cited in Lee, 2005). 이러한 결과는 Lee (2003)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전체피해자의 18.6%만이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인종별 월조요청 실태를 조사한 Moon과 Benton (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인종집단에 비하여 학대사건에 가족 이외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꺼려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개개인의 복지보다는 가족의 평화와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속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국보건사회원에서 1999년에 조사된 연구결과에서도 학대 피해노인의 62.8%는 끝까지 참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학대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학대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다른 사회에서보다 높아질 수 있다.

노인학대를 방지할 경우 학대 피해노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학대 피해노인은 일반노인보다 우울 증가 및 자아존중감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2005). 또한 Choi와 Mayer (2000)는 노인학대를 당할 경우 타질환의 증가, 기능적 장애, 인지적 기능의 손상 및 악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시설에 조기수용 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기도 쉬워, 궁극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안녕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Cited in Ko, 2010).

노인학대에 의한 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 학대 피해노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ong, 2007). 이를 위해 잠재적 피해대상자인 노인이 신고를 통하여 공적도움을 요청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Huh, 2003; Jung, 2007; King, Reece, Bendel, & Patel, 1998), 학대에 대한 정보 및 교육(Jung, 2007; King et al., 1998;

Tilden et al, 1994), 신고관련 법적·제도적 지식(Feng & Levin, 2003; Jung, 2007),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Huh, 2003; Jung, 2007; O'Toole, O'Toole, Webster, & Lucal, 1994) 등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피학대 노인의 대응 행동으로서의 신고의향에 대한 실태(Park, 2005; Seo, 2004), 원조 요청에 대한 태도(Choi, 1993, 2004; Moon & Benton, 2000; Moon & Williams, 1993) 등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으며 노인의 신고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잠재적 피학대 노인으로서의 위험요인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아 공적 도움을 받기 위한 그들의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향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여성노인의 신고의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노인 204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원들이 노인정, 복지관, 교회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

고자 동의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노인을 위하여 조사원들이 1:1로 개별 면담을 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 10일부터 2010년 7월 5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204부는 모두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참여의 자발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및 측정

1) 신고의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신고의향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어르신께서는 학대를 당한다면 도움을 받기위해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라는 1문항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동거형태,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등의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여부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여부는 “어르신께서는 노인들이 신체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때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1문항의 질문에 ‘안다’, ‘모른다’로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4)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는 “어르신께서는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노인학대(노인들이 신체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듣거나 보셨습니까?” 라는 1문항의 질문에 Likert 5점 척도로서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접하지 않았다’, 5=‘매우 많이 접했다’).

5)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oon과 Williams (1993)가 개발하였으며, Yoo와

Kim (2004)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한 12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12개의 사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각 사례에 대한 응답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심한 학대이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는 12개의 노인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12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Yoo와 Kim (2004)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대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여부의 차이는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χ^2 test와 t-test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신고의향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 빈도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여성노인 204명 중 51%인 104명은 본인이 학대를 당한다면 도움을 받기위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의 49%인 100명은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Intention to Report (N=204)

Variable	Categories	n (%)
Intention to report	Yes	104 (51.0)
	No	100 (49.0)

2.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0.7세였으며 대상자의 42.8%가 60~69세, 46.3%가 70~79세, 80세 이상의 대상자가 10.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32.5%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였고, 27.1%는 부부만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의 15.8%는 친구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24.6%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52.7%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87.6%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상자의 32.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자가 23.3%, 고등학교 졸업자가 24.3%, 대학졸업자, 10.8%, 그리고 무학이 9.4%이었다. 대상자의 35%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대상자의 36%는 보통으로 인식하였고, 대상자의 29%가 본인이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대상자의 28.7%가 매우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47.5%는 보통으로, 23.8%가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2) 학대 관련 제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대 관련 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45.3%가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54.7%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에 대하여 대상자의 23.1%가 전혀 접하지 않았거나 거의 접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대상자의 42.4%가 보통으로 접했다고 하였고, 34.5%가 자주 접했거나, 매우 자주 접했다고 하였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는 평균 3.05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12사례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한 학대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신고의향 여부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결혼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로 나타났으며, 연령, 동거형태, 종교유무, 학력수

준,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신고를 하겠다고 한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7.9%, 사별이나 이혼상태로 무배우자인 여성노인의 경우 43.8%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다($\chi^2=4.08, p=.04$).

주관적 경제상태를 보면 주관적으로 본인의 경제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대상자의 70.8%는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통이라고 평가한 대상자의 50%,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대상자의 37.9%가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의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5, p<.01$). 연구대상자들은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좋다고 생각할수록 신고를 하겠다

는 의향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2) 학대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 차이

학대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여부에 따른 신고의향의 차이를 보면 노인복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64.1%(59명)는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복지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상자의 40.5%(45명)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20, p=.01$). 노인복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신고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에 따른 신고의향의 차이를 보면 학대 관련 정보를 자주 접촉한 대상자의

Table 2. Differences in Intention to Re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4)

Variables	n (%) or M±SD	Intention to report		χ^2	p
		Yes n (%)	No n (%)		
Age	70.70±6.72			2.87	.24
60~69	86 (42.8)	50 (58.1)	36 (41.9)		
70~79	93 (46.3)	43 (46.2)	50 (53.8)		
≥80	22 (10.9)	10 (45.5)	12 (54.5)		
Living arrangement				2.82	.41
Couple	55 (27.1)	32 (58.2)	23 (41.8)		
With children	66 (32.5)	34 (51.5)	32 (48.5)		
With friend or relative	32 (15.8)	17 (53.1)	15 (46.9)		
Alone	50 (24.6)	21 (42.0)	29 (58.0)		
Marital status				4.08	.04
Married	107 (52.7)	62 (57.9)	45 (42.1)		
Bereaved or divorced	96 (47.3)	42 (43.8)	54 (56.2)		
Religion				1.51	.22
Yes	177 (87.6)	94 (53.1)	83 (46.9)		
No	25 (12.4)	10 (40.0)	15 (60.0)		
Education				8.18	.08
Uneducated	19 (9.4)	6 (31.6)	13 (68.4)		
Elementary school	65 (32.2)	34 (52.3)	31 (47.7)		
Middle school	47 (23.3)	28 (59.6)	19 (40.4)		
High school	49 (24.3)	21 (42.9)	28 (57.1)		
College	22 (10.8)	15 (68.2)	7 (31.8)		
Subjective health status				4.94	.08
Healthy or very healthy	59 (29.0)	35 (59.3)	24 (40.7)		
Moderate	73 (36.0)	30 (41.1)	43 (58.9)		
Unhealthy or very unhealthy	71 (35.0)	39 (54.9)	32 (45.1)		
Subjective economic status				11.50	<.01
Good or very good	48 (23.8)	34 (70.8)	14 (29.2)		
Moderate	96 (47.5)	48 (50.0)	48 (50.0)		
Poor or very poor	58 (28.7)	22 (37.9)	36 (62.1)		

Note.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missing excluded).

67.1% (47명), 학대 관련 정보를 보통으로 접한 대상자의 47.7% (41명), 정보를 거의 접하지 않은 대상자의 34.0% (16명)가 신고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09, p<.01$). 대상자가 학대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신고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신고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7, p=.02$).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평균 점수(3.15 ± 0.63)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평균점수(2.94 ± 0.6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 비해 학대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고의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신고의향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학대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신고의향 여부

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 노인복지법 인식여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연속 변수들(주관적 경제상태,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항변수(결혼상태, 노인복지법 인식여부)는 가변수로 전환하였다(Table 4).

신고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경제상태($OR=1.99, p<.01$),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OR=1.86, p<.01$), 노인복지법에 대한 인식여부($OR=2.55, p<.01$),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OR=2.06, p<.01$)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좋다고 인지할수록, 노인학대 관련 정보에 접촉한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었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 등의 1점이 증가될수록 대상자의 신고할 의향이 각각 1.99배, 1.86배, 2.06배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인식을 한 응답자는 인식을 하지 못한 응답자보다 2.55배 더 많

Table 3. Differences in Intention to Report by Elder Abuse-related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Intention to Report		χ^2 or t	p
			Yes	No		
			n (%) or M±SD	n (%) or M±SD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Yes	92 (45.3)	59 (64.1)	33 (35.9)	11.20	.01
	No	111 (54.7)	45 (40.5)	66 (59.5)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Frequently	70 (34.5)	47 (67.1)	23 (32.9)	13.09	<.01
	Moderate	86 (42.4)	41 (47.7)	45 (52.3)		
	Rarely	47 (23.1)	16 (34.0)	31 (66.0)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3.05±0.64	3.15±0.63	2.94±0.63	2.37	.02

Note.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missing excluded).

Table 4. Predictive Factors of Intention to Report by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Odds ratio	p	95% CI
Marital status (reference; no spouse)	1.33	.37	0.71~2.47
Subjective economic status	1.99	<.01	1.26~3.12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1.86	<.01	1.22~2.83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reference: no)	2.55	<.01	1.36~4.77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2.06	<.01	1.24~3.40

CI=confidence interval.

이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1.33배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잠재적 피학대 노인으로서의 위험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그들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이는 여성노인들이 피학대 관련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51%는 본인이 학대를 당한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49%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서로 비슷한 비율로 반응을 보였다.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원조요청태도를 조사한 Park (2006)의 연구에서도 향후 사회서비스 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52.9%가 요청 의향을 밝히고, 47.1%가 원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조 요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학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에서 ‘학대상황이 재발한다면 신고하겠느냐’라는 질문에 피학대 노인의 22.1%만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나 Lee (2005)의 연구에서 피학대 노인의 18.6%만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매우 높은 신고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피학대 노인들의 경우 학대를 당했을 때 보통 끝까지 참고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처럼 신고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9). 그리고 피학대 노인들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문제 해결에 개입시키는 것을 극히 꺼려 노인학대 상황을 신고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신고의향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결혼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였다.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 유무가 신고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선행연구들(Feng & Levin, 2005; Huh, 2003; Jung, 2007)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 선행연구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고의향이 높았다는 점은 노년기에 배우자의 유무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자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배우자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기능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가치나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Cotten, 1999),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외부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강하다(Kim, 2004)는 논의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학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결과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서도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상태를 좋다고 인식한 여성노인들은 학대를 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원조요청을 하겠다고 보고한 Moon과 Williams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노년기에 자기통제감(sense of mastery 또는 sense of control)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며,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자기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Jang, Lee, Yoon, & Kim, 2008)과도 관련이 있다. 자신의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노인들은 자기통제감이 높아 대체로 학대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적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감은 변화가 가능하며 심리적·교육적 중재를 통해 증진된 사례도 있으므로(Jang et al., 2008)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기통제감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신고의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즉 노인복지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비해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학대 관련 법적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은 것(Jung, 2007; Feng & Levin, 2005)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피학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ee (2005)와 Seo (2004)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대다수는 가해자가 가족이라서 신고할 의향을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방지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장치 또는 사회적 지원망을 이용하여 가족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과 학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에 따라라도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한 대상자일수록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이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Jung, 2007; King et al., 1998; Tilden et al., 1994)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여성노인에게서 대중매체를 통한 노인학대 관련 간접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평소 건강 정보를 얻는 가장 큰 수단으로 대중매체를 꼽는다는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09). 특히, 가장 많은 노인들이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폭력법을 인지한다고 하는 Lee (2005)의 연구로 미루어 볼 때,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이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방법, 학대신고가 가능한 기관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정도에 따라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보다 노인학대 사례들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한다(Huh, 2003; Jung, 2007; O'Toole, O'Toole, Webster, & Lucal, 1994). 우리나라에서의 노인학대는 대부분 부양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데(Seo, 2000), 노인들은 부양자의 학대행위를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하여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Choi, 1993). 이러한 경우에 노인들은 학대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야 사후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에게 더 심각한 학대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Allan, 2002). 이를 위해서는 학대상황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부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의 내용, 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접촉정도, 노인복지법 인식 여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여성노인의 신고의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제외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접촉정도, 노인복지법 인식 여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 등은 학대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향이나 신고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Feng & Levin, 2005; Huh, 2003; Jung, 2007; King et al., 1998; O'Toole et al., 1994; Tilden et al., 199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이 요인들이 여성노인이나 학대 신고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의향에 대한 예측요인이 됨을 뜻한다. 따라서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큰 노인여성이나 학대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법 인식여부가 노인여성의 신고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예측요인이었다는 점은 노인학대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인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법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예측요인으로 도출된 주관적 경제상태는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향이나 신고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변인으로 포함될 바가 없으며, 이를 노인이나 여성노인의 신고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검토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것이 여성노인의 신고의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기능하는지 반복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향이나 신고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을 밝힌 연구들은 많으나 잠재적 피해대 노인으로서의 위험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그들의 신고의향에 대한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여성노인들이 신고를 통한 공적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였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편의 표집방법으로 소규모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표성이 높은 대규모의 분석 대상을 통해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시 신고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노인이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여성노인 204명 중 51%는 본인이 학

대를 당하는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자의 49%는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여성노인의 신고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경제상태, 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 노인복지법 인식 여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제상태를 좋다고 생각할수록, 노인학대 관련 정보에 접촉한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복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보면, 여성노인의 신고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이나 학대 관련 정보를 홍보·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피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여성노인들이 학대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적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나 학대 관련정보를 홍보·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신고의향 영향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및 학대관련 특성 변인 이외에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신고의향에 대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llan, M. A. (2002). Elder abuse: A challenge for home care nurses. *Home Health Care Nurse, 20*(5), 323-330.
- Choi, H. K. (1993). A study of perceptions on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Jeonju University Studies, 22*, 273-286.
- Cotten, S. R. (1999).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revisited. *Family Relations, 48*(3), 225-233.
- Feng, J., & Levin, M.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 *Child Abuse & Neglect, 29*, 783-795.
- Han, E. J.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Huh, N. S. (2003).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3*, 209-230.
- Jang, Y., Lee, J., Yoon, H., & Kim, S. (2008). Determinants of sense of control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4), 1055-1068.
- Jo, A. J. (2008). Elderly abuse and what to do about i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43*, 16-29.
- Jung, S. K. (2007). *A research for reporter recognition level of elder abuse of responsible person and countermo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Kim, H. J., Joh, H. K., Kwon, H. K., Do, H. J., Oh, S. W., Lym, Y. L., et al. (2009). Concern in and utilization of the mass media health informat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6), 427-439.
- Kim, M. (2004). Factors affecting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older women in the USA: The comparison between married and widow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4), 147-164.
- King, G., Reece, R., & Patel, V. (1998).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raining and attitudes on the lifetime reporting practices of mandated reporters. *Child Maltreat, 3*(3), 276-283.
- Ko, C. M. (2010). A study of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109-118.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9). *A study on elder abuse cases: Focused on elderlies utilizing elderly welfare center of six metropolitan area*.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Population Projection for Korea*. Retrieved June 20, 2010, from Web site: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
- Kosberg, J.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1), 43-50.
- Lee, Y. H. (2003). The impact of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s of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105-123.
- Lee, Y. H. (2005).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Kyungi: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A report of elder abuse cases*. Seoul: Korea,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 Moon, A., & Benton, D. (2000). Tolerance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among African American, Kore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8*(3), 283-303.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3), 386-395.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A study of elder abuse in communitie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O'Toole, A. W., O'Toole, R., Webster, S., & Lucal, B. (1994). Nurses' responses to child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 Violence*, 9(2), 194-206.
- Park, M. S. (2006). A study on the elder abuse fact in southwest Jeonlanamdo.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6(1), 209-235.
- Seo, Y. (2000).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nd the condition of elder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7, 29-73.
- Seo, Y. (2004). Elder abuse in domestic setting an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3(32), 43-77.
- Song, M. S. (2007).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Nursing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6(1), 78-101.
- Tilden, V. P., Schmidt, T. A., Limandri, B. J., Chiodo, G. T., Garland, M. J., & Loveless, P. A. (1994). Factors that influence clinicians'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4), 628-633.
- Yoo, S. H., & Kim, C. S. (2004). A study of old persons' perceptions on elder abuse. In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A study of current state and countermeasure on elder abuse* (pp. 9-39). Seoul: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